

제284회
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

『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』

제안설명자료



2018. 11. .

서울특별시교육청

안녕하십니까?

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입니다.

서울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·조언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장인홍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『서울특별시 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』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□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

- 학교 밖 청소년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교육복지여건을 조성하고, 학습지원 사업을 통해 학력을 획득함으로써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대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.

□ 관련 법규는

- “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.”고 규정하고 있는 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입니다.

□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

- 조례의 제정 목적에 관한 사항(안 제1조), 학교 밖 청소년의 정의 및 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(안 제2조~제3조),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및 지원위원회 설치·기능에 관한 사항(안 제4조~제10조),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(안 제11조) 등입니다.

□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